

선 람	기 관 의 장

제989호 2017. 10. 1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 1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고시 제790호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 5
- 삼척시 고시 제797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 6
- 삼척시 고시 제798호 분할조서 의결 공고 ----- 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7 - 1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10. 13.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릉길 17 외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0.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69-1	강원도 삼척시 월마로 28 (마달동)	20171013	건물신축	20170901	행정구역명(월계,마달)복합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5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릉길 17	20171013	건물신축	20170901	지명(수릉)활용	
3		이	하	여	백		
4							
5							
6							
7							
8							
9							
10							
11							
12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2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마달동 69-1	강원도 삼척시 월마로 28 (마달동)	20171013	건물신축	20170901	행정구역명(월계,마달)복합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35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수릉길 17	20171013	건물신축	20170901	지명(수릉)활용	

삼척시 공고 제2017 - 790호

#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2017/2018년 삼척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 삼척시



### □ 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어업의 명칭	어업권 포기 및 처분현황				어장의 위치	어업권자	비고
	구분	면허번호	면허기간	면적			
정치망어업	포기	삼척 제2002-4호	2002.08.21. ~ 2022.08.20.	29.9ha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지선	최도순	대체개발 (어장이설)
	신규	삼척 제2017-1호	2017.09.25. ~ 2027.09.24.	29.9ha			
복합양식어업	포기	삼척 제2003-9호	2003.12.19. ~ 2023.12.18.	6.0ha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지선	김광석	대체개발 (어장이설)
	신규	삼척 제2017-2호	2017.09.25. ~ 2027.09.24.	6.0ha			
복합양식어업	포기	삼척 제2003-10호	2003.12.19. ~ 2023.12.18.	6.0ha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지선	김광석	대체개발 (어장이설)
	신규	삼척 제2017-3호	2017.09.25. ~ 2027.09.24.	6.0ha			
복합양식어업	포기	삼척 제2012-3호	2012.08.21. ~ 2019.12.01.	6.0ha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지선	김광석	대체개발 (어장이설)
	신규	삼척 제2017-4호	2017.09.25. ~ 2027.09.24.	6.0ha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正本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7.10.12. ~ 2017.11.01.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삼척시공고 제2017-797호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위원 외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57-13	대	205	김*매 외1	3*.1*.2*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1*
								김*매 외 1인

2017년 10월 12일

### 삼척시 장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4호서시)

### 분할조서 의결 공고

삼척시공고 제2017-798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 기간 : 2017.10.12. ~ 2017.10.25.
-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등기인 외 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분할 필지 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삼척시	원면	임원	874	대	480	2	김*기 외 1	5*.1*.2*	울산시 남구 무*동 1***-5 정*빌* 1*1	김 * 기 외 1인

2017년 10월 12일

### 삼척시 장